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복지정보 운영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정책 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살예방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0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복지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사업지원관	1명 (고위공무원단)	2020년 7월 31일까지
2)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	6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2022년 1월 31일까지
3)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사업과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2020년 7월 31일까지
4)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2021년 5월 31일까지
5)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	5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경위 1명)	2021년 3월 31일까지
6)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6명 (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 관 나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